

구성원 소개

김병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일반, 특수금융(부동산개발금융 및 자산유동화), 증권거래, 자본시장법, 회사법, REITs(부동산투자회사),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M&A, 기업자문 분야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각종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수탁회사, 연기금 등)을 위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고, 특히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및 자산유동화 관련 자문 및 소송과 각종 특별자산(한우, 태양광에너지, 이월의류, 폐기물재생에너지, 고춧가루, 병행수입, 드라마, 공연전시, 명품인테리어상품)펀드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삼정KPMG의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본부 RS/RE(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팀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력

- 1992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경력

- 2001. 12.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1.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4. 1. ~ 2008. 2. 법무법인 자하연 소속변호사
- 2009. 3. ~ 2009.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제2기(자본시장법 심화학습) 수료
- 2013 삼정KPMG 회계법인 FAS본부 파견근무
- 2013. 3. ~ 2013.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제6기(개정 신탁법 심화학습) 수료
- 2013. 9. 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대상 강의(주제: 개정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기구 규제)
- 2013 ~ 2014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전문가 과정(제6기, 제7기) 강의(주제: 부동산개발 사업 PF 관련 법적 분쟁)
- 2015 LH공사 신금융사업 실무 과정 강의(주제: 민간 PF 금융구조의 이해)
- 2018. 3.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자문대상> 수상
- 2018. 3.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금융, 증권)
- 2014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TEL.
02-3479-7575
MAIL.
bikim@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 [국제중재] 미국 연방법원 및 미국 중재원에 제기 된 국제 상사분쟁에서 전부 승소 이끌어
-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 [보전] 미등기 상가점포와 관련하여 인도 및 철거 단행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 [지식재산]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특허비침해 판결 이끌어
- [민사]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형태의 임대차에 따라 수선의무의 면제를 인정받은 사례

주요업무분야

- 금융소송
- M&A
- 기업금융
- 금융거래
- 프로젝트금융(PF)
- Estate Planning
-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
- 산업기술유출대응
- 경영권 분쟁

i)주요업무분야

-금융일반, 특수금융(부동산개발금융 및 자산유동화), 자본시장법, 회사법, REITs(부동산투자회사),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부동산개발(시행사, 시공사)

ii)처리 사건

*국내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신탁업자, 부동산신탁회사, 기금 등) 자문

증권, 금융, 회사법 관련 각종 소송수행(주식분쟁, 경영권분쟁, 자본시장법위반분쟁, 부동산개발사업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 간의 제반 분쟁)

*각종 회사의 M&A 거래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금융 (Project Finance)

-부동산펀드, 부동산 관련 특별자산펀드, 부동산실물매입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PEF, PFV)

-국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연립주택, 고급빌라, 상가, 쇼핑센터, 아파트형공장 등 신축분양사업, 국내 골프장, 낚시시설, 종합관광단지, 콘도미니엄, 펜션, 스포츠센터 등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민자역사 개발사업, 해외 주상복합, 호텔, 리조트, 풀빌라 등 개발사업

*자산유동화 (Asset-backed Securitization, Asset-backed Loan)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채권, 증권사 보유 대출채권, 부동산 PF 관련 대출채권 자산유동화(ABS), 정보통신사의 수수료채권, 엔지니어링회사, 의류회사, 시멘트회사의 장래 매출채권 담보부 자산유동화 (ABL), 후순위 유동화채권 자산유동화 (ABCP),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의 NPL 자산유동화, 주식담보부 대출 등 인수금융

*자산유동화 계획등록 및 양도등록 업무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사의 자본시장법(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국내, 해외 부동산 펀드 법률자문, 국내, 해외 부동산 관련 특별자산펀드 법률자문, 국내, 해외 부동산실물매입펀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연립주택, 고급빌라, 상가, 쇼핑센터, 아파트형공장 등 신축분양사업, 국내 골프장, 낚시시설, 종합관광단지, 콘도미니엄, 펜션, 스포츠센터 등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민자역사 개발사업, 주상복합, 호텔, 아파트, 리조트, 풀빌라 등 개발사업

*국내외 자산운용회사 및 증권사의 자본시장법(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관련 국내, 해외 특별자산펀드 법률자문

-한우펀드, 태양광에너지펀드, 이월의류펀드, 폐기물재생에너지펀드, 고춧가루펀드, 모래펀드, 고철 수입펀드, 병행수입펀드, 드라마펀드, 공연전시펀드, 명품인테리어상품펀드, 수입육펀드, 산업단지펀드 등 각종 특별자산펀드, 부동산펀드